#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 2024-002-010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4. 1. 24.

## 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
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 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 (이하 '피심인')는 ( ), 공동주택( )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「개인정보보호법<sup>1)</sup>」(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이다.

<sup>1)</sup> 舊 개인정보 보호법[법률 제16930호, 2020.8.5.]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현행 보호법[법률 제19234호, 시행 2023.9.15.] 적용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(2021.4.29.) 건과 관련 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피심인은 '20.11.20.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범 및 시설 안전 등을 목적으로 외부 베란다\*(3대), 아파트 계단\*\*(2대)에 CCTV 총 5대를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
- \*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통행인의 경우 베란다의 CCTV가 설치·운영되어 영상 촬영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음
- \*\* 내부 계단을 이용하는 통행인은 출입문에 'CCTV 녹화중(스티커)' 안내 표지판(필수 사항 4가지 누락)이 부착되어 영상 촬영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

피심인은 외부 베란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통제없이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으나, 외부 주차장에 법정 CCTV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. 6. 2. ~ 7. 13. 간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'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총 3차례 요청하였으나, 모두 반송처리 되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(제2022-42호, 공고일 2022.7.14.)를 하였으며,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이내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"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<sup>(제1호)</sup>, 촬영 범위 및 시간<sup>(제2호)</sup>,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<sup>(제3호)</sup>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sup>(제4호)</sup>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Ⅳ. 처분 및 결정

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
- ▶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 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▶ 상기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(시정조치 등)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2024년 1월 24일

위원장 고학	학수 (서	명)
--------	-------	----

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
위 원 김일환 (서명)

위 원 김진욱 (서명)

위 원 김진환 (서명)

위 원 박상희 (서명)

위 원 윤영미 (서명)

위 원 조소영 (서명)